

1. 개정이유

그간 법무부의 업무처리 지시사항에 따라 운영해 오던 절차를 우리 부 지침에 반영하여 행정소송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화하고, 소송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소송 비용 회수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행정소송법,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소송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호의 경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5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전 심급을 통틀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(다만, 감정료 등 별도의 소송 비용이 소요된 경우는 제외한다)

제62조 중 “2022년 7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p>5. (생략)</p> <p>제62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<u>2022년 7월 1일</u>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0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<u>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(다만, 감정료 등 별도의 소송 비용이 소요된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62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5년 1월 1일</u>----- <u>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
--	--